

스마트공장 과제의 공급기업 파산 BUT 도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

3년 최대 제재 - 적법: 서울행정법원 2022. 9. 20.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

- (1)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진행 후 공급기업 파산, 소멸
- (2) 도입기업에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,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 수령, 정부지원금 일부를 공급기업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입금 +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미지급
- (3)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관련 허위계산서 발행 + 완료보고서 내용 허위
- (4) 기정원에서 파산한 공급기업 외 도입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조치

(5) 도입기업(원고)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피고)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

2. 도입기업의 주장

- A. 공급기업 폐업으로 실패한 것으로 공급기업의 책임, 도입기업 귀책 없음
- B. 공급기업의 귀책사유 명백한 사안이므로 도입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가혹하고 일부 환수가 타당함

3.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

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기업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지 않았고, 전담기관 피고에게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,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의 사용·유지·보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함. 기정원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여 3년 동안 도입기업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.

4. 구체적 판결 이유

(1) 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도입기업인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
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3년간 원고의 사업 참여를
제한할 수 있고, 도입기업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협약이 해제·해지된 경우
피고는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(2) 제출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및 사업완료보고서 등은 허위로 기재된 자료이고,
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를 사용·유지·보수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정당한
사유 없이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는바, 피고로서는 앞서 본 협약상의 규정에
근거하여 3년간 원고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,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한 이 사건
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(3) 한편 원고는 공급기업인 G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G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
환수하여야 하고, 적어도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을
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도입기업인 원고의 이 사건 협약 위반의
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, 원고는 공급기업인 G의 의무 불이행을 충분히
인지하였으면서도 G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등과 같은 구제
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,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

기업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의 유지·보수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 사건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기까지 한 점,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도입기업인 원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의 환수를 구할 수 있고, 도입기업인 원고의 귀책과 공급기업인 G의 귀책 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정하거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환수금을 일부 감액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첨부: 서울행정법원 2022. 9. 20.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